

스팸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목 차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1
2. 수신동의(제50조제1항 본문)	4
3. 수신동의 예외(제50조제1항 단서)	7
4.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제50조제2항)	10
5. 야간수신동의(제50조제3항)	12
6. 표기의무(제50조제4항)	13
7. 처리결과 통지(제50조제7항)	17
8. 수신동의 여부 확인(제50조제8항)	20
9. 게시판 광고(제50조의7)	23
10. 과태료 부과(제76조)	24

본 자료는 2014년 11월 발행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방식과 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차후에 질의 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 2015년 2월 6일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1)전송자에 관한 정보, 2)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
- 영리를 목적(부수적으로 영리목적이 있더라도 포함) 하는 자(법인)가 고객 등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

■ 고객에게 적립된 포인트(마일리지) 관련 정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포인트 안내 정보는 고객에게 거래계약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안내하는 것은 전송자의 의무에 해당하고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 포인트가 언제 소멸될 예정이니 사용하라고 하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포인트를 어디에 쓰라고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영업점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 광고성 정보 예외에서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 및 수신자가 사용하였던 재화 또는 서비스”가 무료인 경우에도 유료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 해당 내용은 유료·무료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
- 기존거래관계가 유상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 것과 구분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영업을 하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서 “누구든지”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법인)이 적용대상이며, 따라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함

■ 비영리 법인이 전송하는 정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영리법인이나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는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서 “영리”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으로서의 영리(즉,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가 아님
- 비영리 법인에서 전송하는 정보는 정보의 성격을 판단하여 법인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고 물품 판매 및 물건

판매를 독려(마감시간 안내)하는 등의 안내 정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발송하는 경우라도 수익을 얻기 위한 홍보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함

■ 영업사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이 고객에게 보내는 새해인사, 생일축하, 기념일 축하 문자 등 일부 문자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해당 문구내용보다는 그 문구에 담긴 의미가 홍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

■ 홈페이지가입자 등에게 보내는 뉴스레터(최근동향 및 소식을 전달)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뉴스레터 자체가 기관의 홍보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 컨텐츠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언론사에서 보내는 뉴스레터가 기사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수신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뉴스레터를 받는 경우(유료 구독)에는 계약관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쿠폰 발급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쿠폰은 홍보목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쇼핑몰 등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 안내 메일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

■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되나요?

-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예금만기안내정보, 대출만기안내정보, 주문 처리내역정보, 배송정보 등
- 쿠폰도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회원가입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메일도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정치인들이 발송하는 선거 운동관련 문자도 개인의 이미지 홍보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여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야 되나요?

-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려면 영리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선거홍보문자는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준수할 필요 없음

-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보내는 정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설문조사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순히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라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제품 선호도 조사, 소개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영리목적을 가진다고 보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학원에서 합격자를 상대로 합격자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광고성 정보에 해당
- 고객이 상담한 후에 행사나 제품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해당 행사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콘도예약 확인 정보에 콘도 이용과 관련된 부대시설 정보를 같이 첨부하여 보내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콘도예약 확인 문자는 “수신자와 체결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만, 콘도와 관련된 부대시설 정보(광고성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다음카카오 서비스 중 카카오 픽이라는 쇼핑서비스가 있는데, 친구찬스라고 해서 물건을 친구와 공유해서 같이 사면 혜택을 받는데 친구와 공유하기 위하여 상품을 친구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이 요청의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해당 요청 메시지는 친구에게 해당 광고를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
- 광고성 정보 예외 중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정보가 무엇인가요?
 - 회원 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 안내하는 정보 등을 의미
- 회원가입 처리 결과 안내정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회원 계약에 따른 안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2. 수신동의(제50조제1항 본문)

- 안내서상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용 약관에 넣어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 수신자에게 약관 내용 중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그 수신동의의 효력이 있습니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수신동의는 수신자가 본인이 광고성 정보를 수신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야 법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수신동의라 할 수 있음
 - 오프라인으로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약관에 광고수신동의에 관한 내용이 있음을 고지한 후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온라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본 약관에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기하여 안내하거나, 혹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항을 별도로 두어야 함
 - 명시적으로 수신동의를 받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기 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약관을 통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 회원가입시 “문자서비스 수신동의”나 “정보메일서비스 수신 동의”에 동의 체크를 받는 것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볼 수 있나요?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수신자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게 한 뒤에 받아야 하며 따라서 “문자서비스 수신동의”나 “정보메일 서비스 수신 동의”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합 함
 - 해당 수신동의는 전송자가 고객에게 보낼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수신매체 선택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볼 수 없음
-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 사이트(홈페이지)가 통합회원으로 운영되더라도 광고전송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 통합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홈페이지)에 대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다른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볼 수 없음
 - 통합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서비스나 브랜드에 대해 각각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통합회원 가입시 명시적으로 모든 서비스와 브랜드 등을 모두 고지한 다음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모든 광고전송이 가능
 - 같은 그룹의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이 통합회원으로 운영되더라도 광고를 보내려면 각각 동의를 받거나 모든 서비스를 명시하고 포괄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아서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ex : 백화점에 대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를 하였다고 하여 마트나 영화관 광고를 보낼 수 없음)

- 한 개의 법인이 여러 서비스 비즈니스를 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면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모든 서비스에 대해 광고가 가능하나요?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신자가 수신동의시에 인지할 수 있었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두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지 않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님
 - 하지만 수신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을 때 이메일, SMS등 수단별로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광고 수신동의를 받으면 수단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수단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 일단 광고수신동의를 받으면 수신자에게 동의 받아 수집한 연락처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기존거래관계에 있는 자에게 수신동의를 요청하는 정보를 전송해도 되나요?
 - 수신동의 요청하는 것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기존거래관계에 있는 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후 6개월 이내에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광고수신동의를 요청하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앱 푸쉬 알람의 허용/허용안함(온/오프) 기능이 “수신동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나요?
 - 앱 푸쉬 알람의 승인 여부는 해당 기기에서 수신을 하여 화면에 띄워주겠다는 의미일 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해당하지 않음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해당 고객에 대하여 매체와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앱 푸쉬 알림 설정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동일시 하면 안되고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휴대전화 앱을 개발해서 앱을 통해 푸시메세지나 뉴스레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로그인 없이 앱을 실행하는 경우 수신 동의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앱을 처음 설치한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되고, 앱을 처음

실행하였을 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창을 띄워 동의를 받은 다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 수신자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물어볼 필요가 없음
- 수신자가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설정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됨

■ 앱 설치 시 푸쉬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가 디폴트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대해 앱 설치전에 회원가입 등으로 이미 받아 둔 회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별도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아놓지 않은 회원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
- 또한 회원이 앱 로그인 전에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앱 최초 실행시에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사업장(법인 등)을 인수할 때 고객DB를 전달 받게 되는데, 기존에 광고 수신 동의를 한 고객에게는 인수자가 광고를 전송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 광고수신동의에 의해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

■ 기존에 수신동의 여부가 불명확한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나요?

-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 앱최초 실행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면 비로그인 상태에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고, 로그인을 하여 설정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면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데, 로그인 상태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해제한 후에 로그아웃을 한 경우, 비로그인 상태에 있을 때 해당매체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도 되나요?

- 비로그인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도 됨

■ 앱을 통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회원가입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는데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 별도의 창을 띄워 동의를 받고 동의내역을 저장하여두면 됨

3. 수신동의 예외(제50조제1항 단서)

■ 수신동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 고객과 기존거래관계에 있거나 방문판매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육성 전화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기존거래관계는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한자가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서비스를 제공 중에도 거래관계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
- "전화권유판매"란 육성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청약을 하여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져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
- "육성"이라 함은 광고 문구를 녹음한 ARS나 기계음이 아니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상담원이 전화를 하는 것을 말함
-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화권유를 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 한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음

■ 기존거래관계에서 회사(법인)의 직원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연락처를 직접 수집한 자의 누가 되나요?

- 거래당사자가 회사(법인)인 경우 담당직원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라도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해당 회사(법인)이 됨
- 따라서 담당직원이 바뀌어 다른 직원이 당해 고객에게 기존거래관계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더라도 기존거래관계가 적용

■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받는 목적은 배송을 위해서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 동의 없이 전자우편 또는 연락처로 광고를 보내도 되는 것인지요? 제50조에 대한 위반은 아니지만 이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 규정에 위배되나요?

- 기존거래관계에 따라 광고를 보낼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 이용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본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고 봄

■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육성 TM(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수신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스팸관련 규정(표기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되나요?

-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도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양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지만, 수신동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준 것임
- 스팸 관련 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든 법 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없고 이를 배제하려면 명확한 배제규정을 두어야 함
- 따라서 육성 TM이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도 수신거부시 광고전송은 금지(제2항), 야간광고전송시 별도의 동의도 필요(제3항),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제7항), 야간광고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매2년마다 수신동의여부를 확인(제8항)하여야 함

■ 영업점을 인수하여 기존고객 정보를 획득한 경우 해당 고객들에게 광고를 전송할 수 있나요?

- 우선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 정보에 대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고객 정보를 넘겨받으면 안됨
- 제3자 제공에 동의가 있어 이를 합법적으로 인수한 경우 기존에 고객들이 수신동의를 한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수신동의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은 가능
- 만약 수신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거래관계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넘겨받은 인수인은 기존거래관계로 광고성 정보 전송은 불가

■ 지속적으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기존거래관계가 인정되나요?

- 이통사와 고객의 휴대전화 이용계약이나 인터넷 사용 계약과 같이 거래(가입)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기존거래관계로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입한 고객의 번호로도 기존거래관계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나요?

- 배달 또는 물품 수령을 목적으로 번호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현금영수증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의 거래를 위하여 수집한 번호가 아니며, 현금영수증 적립자 번호와 고객 번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됨

- 고객과 거래가 종료가 되면 6개월 이내에 기존거래관계로 광고전송가능한데 6개월 지나면 기존 마케팅 동의한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나요?
 - 고객에게 받은 수신 동의는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거래유무와 상관없이 광고전송이 가능하고, 기존거래관계에 따른 광고전송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없을 때 적용
- 고객이 회원가입하면서 연락처를 입력한 후, 차후에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거래관계가 존재하지만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회원가입시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 구매할 때 마다 불필요한 고객 정보 입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 경우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입력하였던 연락처를 다시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4.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제50조제2항)

■ 수신거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이까요?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부터는 광고를 전송하면 법 위반이 됨

■ 문자로 광고 전송 후, 문자를 받은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했을 때, "수신거부" 처리를 하면서, 수신자의 "수신동의철회"를 같이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송했던 매체에 대해서만 거부처리 하면 되나요?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문구는 일반적으로 수신거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음
-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수신동의철회라는 의사표시로 해석되기 때문에 수신동의철회로 보고, 수신자가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신거부를 하였다면 모든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거부(수신동의철회)하였다 판단하면 됨

■ 가입한 (휴대)전화 명의자가 변경되어 가입자(서비스 이용자 혹은 수신동의자)가 아닌 현재의 (휴대)전화 명의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 수신거부를 해줘야 되나요?

- 현재 휴대전화 명의자가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수신거부 처리를 하여도 됨

■ 계약해지가 수신거부로 볼 수 있나요?

- 홈페이지 탈퇴는 수신거부로 볼 수 있지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 고객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 전체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이 금지 되나요?

- 전체에 대해 광고성 정보 전송을 거부한 것으로 봄

■ 수신자가 광고성 SMS에 적힌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전송자(회사)에 대한 수신거부로 보아, 광고성 SMS외에 e-mail 등

에 대한 수신동의도 거부를 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상 스팸 관련된 규정들은 국민들 즉 수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임
- 입법 취지에서 보면 수신자가 전송자에게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신거부를 하였다면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성 정보에 대해 거부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 즉 SMS을 보내지 말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다면 전체에 대해 거부를 한 것으로 봄
- 별도로 거부를 받으려면 별도로 동의를 받아서 적용하여야 함

■ 이메일 수신거부시 해당 이메일 주소에 여러 고객이 붙어 있는 경우(누가 거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추가정보를 물어봐도 되나요?

- 이메일 수신거부시 추가정보를 입력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이메일 주소에 대해 모두 수신 거부처리 하면 됨

5. 야간수신동의(제50조제3항)

- 야간(밤9시부터 아침8시까지)에 광고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발송한 시간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수신자에게 도달한 시간을 의미하나요?
 - 입법 취지가 수신자의 수면권과 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봄
 - 시스템 등의 문제(딜레이)로 전송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야간에 광고가 전송 된 경우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함
- 이메일 광고성 정보 전송은 야간수신동의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메일은 수신자의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나요?
 - 야간수신동의는 야간에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야간수신동의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한번 더 받아야 한다는 것(동의가 2번 필요)이고 이메일은 야간광고 전송에 대한 예외(2번째 동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주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이메일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6. 표기의무(제50조제4항)

- 전송자의 명칭은 업체명을 적으면 되나요?
 -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해당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면 되며, 업체명 뿐만 아니라 서비스명을 사용하여도 됨
-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표기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되나요?
 -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신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으며, 수신동의를 한 사람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표기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보내야 함
- 휴대전화 등의 앱(어플) 푸쉬 알림도 표기의무 사항을 지켜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고를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문자와 같이 표기의무사항을 모두 지켜야 함
 - 또한 야간광고전송도 적용되기 때문에 야간에 푸쉬 알림을 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야간광고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 휴대전화 푸쉬 알림에 문구수의 제한이 있더라도 전송시에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알림을 전송하여야 함
 - 따라서 "수신거부"에 대한 안내문구를 삽입해서 발송하여야 함
- 앱에서 푸시메시지의 경우 길이가 짧아 표기의무사항이 모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해당 푸시 메시지를 한번 클릭하면 표기의무사항이 모두 보이도록 하여도 가능하나요?
 - 가능함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정보통신망법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되나요?
 - 친구추천으로 수신동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지만 광고를 전송하려면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처리결과 통지나 수신동의여부 확인을 위하여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광고)를 붙여야 되나요?
 - 해당 정보는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광고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붙이지 않고 보내도 됨

- 무료 번호인 080번호를 넣는 경우 “수신거부”만 기입하여도 되는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별표6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벤트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벤트 참여하는 사람의 발신번호로 친구나 가족 등에게 해당 이벤트를 알리는 추천문자전송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발신번호는 이벤트 참여자 번호, 받는 사람은 전송자 가족(친구)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광고표기의무를 지켜야 되나요?
 - 광고성 정보 전송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을 지켜야 함
 - 따라서 수신동의를 받고 광고를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시에는 표기의무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함
 - 수신인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메세지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또한 이벤트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게 한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발신번호랑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 발신번호가 연락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 즉 발신번호로 수신자가 전송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내에 연락처를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
 - 만약 발신번호로 전송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의 번호인 경우에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됨

- 발신번호를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넣어서 전송 하는 경우 본문에 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됨

- 무료수신거부번호를 080 번호가 아니라 웹링크를 넣어 링크를 타고 들어와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하여도 되나요?
 - 무료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웹링크 방식에 따른 수신거부 방식을 안내하여서는 안됨

- 080수신거부번호가 상담원으로 연결되는 경우 상담원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요?

- 일반적인 영업시간내에 상담이 가능하면 됨
- LMS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제목과 본문이 있는데 (광고)는 어디에 적나요?
- 법에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휴대전화별로 제목이 본문에 표시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목과 본문에 모두 넣고, 본문내용 앞에는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 이메일 광고 전송시 수신거부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한글 및 영어로 둘 다 안내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른 별표6에서 이메일 광고 전송시 수신거부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한글 및 영어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표기하여 안내하여야 함
- 광고 전송시 이미지로 하여 이미지 내에 표기의무사항을 기입해서 전송하여도 되나요?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기의무사항인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은 이미지 내에 넣어서 전송하면 안됨
 - 광고 내용은 이미지로 하여 전송하여도 되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는 문구는 텍스트로 표기하여야 하여야 함
 - 휴대전화 등에 푸쉬 알람을 이미지로 보내는 경우에는 필터링과 무관하기 때문에 표기의무사항을 이미지에 포함하여도 됨
- 이메일의 경우 수신거부 버튼을 운영하지 않고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기입해도 표기의무사항을 충족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규정된 시행령 별표6을 보면 전자우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
 - 수신거부는 기본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에서 쉽게 수신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이메일의 경우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내서에 나와 있는 방식과 같은 수신거부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고 무료수신거부 080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또한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전화기가 없는 이용자는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안내서에 나와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안내해야 함

■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을 보면 연락처의 예시로 전자우편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로 되어 있지만 모사전송 및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는 전화변화 또는 주소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전자우편을 제외하고 다른 매체에서는 연락처로 이메일 주소를 사용 할 수 없음

■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에서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을 안내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대출광고입니다”, “대리운전광고입니다”와 같은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 전화임을 알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것을 의미함

■ 이메일 광고 전송시 [수신거부]를 클릭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여도 되나요?

- 로그인을 요구하는 것은 안되지만 이메일 수신거부시 해당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육성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안내서에 나와 있는 예시와 같이 080 무료 수신거부번호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담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에도 수신거부방법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안내원이 육성으로 음성광고를 하면서 수신거부를 하고 싶은 경우 안내원에게 직접 이야기 해달라고 먼저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를 한 후에 광고내용을 안내하는 경우 별도의 무료수신거부번호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수신거부방법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

■ 육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되나요?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설문조사인 경우에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 해야 함

7. 처리결과 통지(제50조제7항)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수신동의를 받는 화면에서 저장되었음이 나올 때 수신동의 처리결과를 팝업을 띄워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나요?
 -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1)전송자의 명칭, 2)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이 철회 사실, 3)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자, 4) 처리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안내를 하면 가능함
- 육성으로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 수신거부를 처리한 후 곧바로 상담원이 수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1)전송자의 명칭, 2)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이 철회 사실, 3)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4) 처리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안내를 하면 가능함
- 처리결과 통지시 날자를 “금일” 또는 “오늘”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 안내사항에 날짜를 넣은 이유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사표시를 언제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임
 - “금일”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 차후에 이를 확인할 때 해당 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일로 안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처리결과의 통지시 다수의 매체가 있는 경우 어느 매체로 해야 되나요?
 - 휴대전화, 이메일 등 매체별로 별도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필요 없이 전송자가 하나의 매체를 선택하여 통지하면 됨
 - 휴대전화로 수신거부가 오더라도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도 가능
- 수신거부 처리결과를 통지 할 때 수신자가 차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하여 주어야 되나요?
 - 수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 할 때 수신자가 차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녹음, 복사, 캡쳐 등이 가능한 형태로 통지하여야 함
 - 동의를 받은 후 처리결과를 팝업 형태로 띄워서 통지하는 것도 가능
- 홈페이지나 앱상에서 수신동의 설정 변경시 처리결과 통지를 해야 되나요?
 - 설정 등의 메뉴에서 수신동의 설정을 바꾸는 경우 해당 설정 변경이 광고전

송자의 서버상의 설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수신거부에 해당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함

- 하지만 단지 앱 설정을 바꾸는 것이어서 광고전송자의 서버에서는 알 수 없고 전송자는 전송을 하지만 단순히 수신자에게만 수신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된 정보를 수신자가 단순히 안보겠다는 의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됨
- 전자 설정변경의 경우 바로 팝업을 띄워서 처리결과를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

■ 현장에서(오프라인에서) 주문 등록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의 각종 수신동의에 체크가 된 경우, 이를 시스템 등록 후 14일 이내에 수신동의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송해야 되나요?

- 수신동의 처리결과 통지의 기산점은 수신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이며 따라서 계약서상에 수신동의를 체크한 이후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시스템 등록 여부는 상관없음

■ 처리결과의 통지에서 서버에 등록한 기준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받은 기준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오프라인으로 계약 신청서류를 받아서 서류상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상 내용(광고수신동의)이 회사 서버에 등록되기 까지 시간이 하루 이상 걸릴 수가 있는데, 14일의 기산점 기준이 서버에 등록된 날이 아니라 고객이 서명을 한 날이라는 의미임

■ 처리결과의 통지를 14일 이내라고 하였는데 가령 1월 1일 오후 3시에 동의 철회하였다면 1월 15일 오후 3시 이전까지 이나요?

- 14일 이내는 의사표시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월 15일 24시 까지임

■ 처리결과의 통지에 대한 증명을 전송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면 이를 증명한 것으로 되나요?

-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족하고 해당 의사표시자에게 처리결과가 나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서면 회원가입(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계약을 한

고객에게 해당 회원가입 및 계약 상태에 대한 확인하는 해피콜을 하면서 수신동의 처리결과 통지도 같이 하여도 되나요?

- 가능함

- 수신자가 수신동의를 하였다가 수신동의를 해제하였다가 다시 수신동의를 하는 등 수신동의와 수신동의 철회를 반복한 경우 매회별로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되나요?
 - 법에서 해당 날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일에 최종적으로 체크된 것으로 처리결과를 통지를 하면 됨(매회 하지 않고 날자를 기준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함)
- 당사 회원이 되는 채널은 "홈페이지, 오프라인 방문, 모바일" 입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가입 후 오프라인 즉, 백화점에 내점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구두로 완료되었음을 고지하고 있는데, 별도 대면 업무이다 보니 증빙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기존처럼 현장에서 처리 후 결과를 구두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도 되나요?
 - 현장에서 구두로 즉시 안내 하여도 되지만 해당 방법으로는 차후에 고객이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할 시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명 등 증빙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음

8. 수신동의 여부 확인(제50조제8항)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2014년 11월 29일)되기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고객들에게는 언제까지 수신동의 확인을 해야 되나요?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사람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6조¹⁾에 따라 2014년 2014년 11월 29일에 동의 받은 것으로 보아 2년 후인 2016년 11월 28일까지 확인을 하여야 함
-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도 되나요?
 - 2년 내에 받는 것이라면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음
 - ex) 2015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은 수신동의를 2016년 12월 31일에 일괄적으로 확인
- 회원이 로그인 했을 때 비밀번호 변경 안내와 같이 로그인시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하나요?
 - 동일 페이지나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서 비밀번호 변경 안내와 같이 확인하는 것은 가능(팝업으로 확인하는 것은 안됨)
 - 하지만 2년 이내에 로그인을 하지 않는 수신동의자에게는 별도의 확인을 해야 함
 -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도록 전송자는 수신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지만, 로그인을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정보가 수신자에게 전송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로그인을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만 해놓은 것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수신동의 여부 확인시 가입자가 집 전화번호 외에 HP와 E-mail이 모두 없는 경우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집 전화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회사에서 고객에게 문자와 메일에 대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았는데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각각 따로 해야 되나요?
 - 전송자가 편한 것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만 받으면 됨

1) 제6조(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제62조의 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수신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였는데 수신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수신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에 하였던 수신동의 의사표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
- 수신동의 유지의사 확인을 하는 것으로 제50조제8항 의무를 충족
- 다시 2년 뒤 수신동의를 한 날이 되기 전까지 확인을 하면 됨

■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면서 정보 하단에 수신동의여부 확인 문구를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의 수신동의여부 확인은 별도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광고성 정보나 처리결과 통지 등에 포함하여 확인하여서는 안됨

■ 수신동의 확인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와 함께 해도 되나요?

- 수신동의 확인은 수신동의 확인만 별도로 해야 함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회원이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이메일 수신에 대해서만 거부를 한 경우, 수신동의여부 확인을 이메일로 하여도 되나요?

- 법률상으로는 수신동의 여부 확인은 광고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부한 경우라도 전송자가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을 하여도 됨
- 즉 수신동의 여부 확인은 전송자가 자유롭게 매체를 선택할 수 있음
- 하지만, 고객이 이메일로 수신을 거부한 상태에서 보내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고객이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 난 어떠한 정보도 수신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기 제기하는 경우)

■ 수신동의여부 확인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동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럼 2년 뒤에 또 수신동의여부를 확인 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3은 최초 동의한 날로부터 매2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등에 따라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 정보를 파기(별도 저장)하는 경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 해야 되나요?

- 타 규정에 의하여 회원정보를 삭제하거나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다면 자동으로 수신동의도 철회 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수신동의 여부확인 의무도 없어졌다고 봄

■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SMS, 이메일 말고 고객과 직접 대면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나요?

- 정보통신망법상 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특별한 방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동의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게 자료를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함
-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는 경우 서면으로 확인받아두는 것이 좋음

■ 수신동의도 받고 기존거래관계가 지속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기존거래관계로 광고를 전송하기 때문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2년 내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함

9. 게시판 광고(제50조의7)

- 동호회 카페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광고를 올리려면 운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판에 올리려면 운영자나 관리자이 동의를 받아야 함
 - 게시판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게시판에 물품을 사고 팔수 있는 게시판을 둔 경우에 해당 게시판은 게시판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사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5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란 어떤 게시판을 말하나요?
 -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바로 누구나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함
- 게시판 운영자나 관리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나요?
 - 법에서 게시판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음
- 본인의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에 광고성 정보를 올리면 친구들에게 광고성 정보가 보이게 되는데 문제가 있나요?
 - 본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 친구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상 문제가 없음

10. 과태료 부과(제76조)

- 시스템오류나 직원실수에 따른 누락 등으로 수신동의 여부 확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 과태료 부과를 하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한 후 판단
- 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번호를 변경한 후 착신 신청을 하여 변경된 번호로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어 변경된 번호를 기반으로 신고를 한 경우 변경 전 번호에 대해 수신동의를 받은 전송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 과태료 부과를 하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한 후 판단
- 광고성 전송하였는데 실수로 표기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해 바로 바로 정정 문자 보낸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과태료 부과를 하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한 후 판단
- 수신인이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과시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고객의 정보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어야 되나요?
 - 기준은 별도로 없음